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의 공공목적 임시사용 시  
무상 대여 및 양여〉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0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2.
3. 회부연월일 : 2025. 1.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매입하기 전 이를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4조의2(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국가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현행법은 ①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②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 대여나 양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sup>1)</sup>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을 이용하여 공공목적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sup>2)</sup>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히 반환공여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미군 주둔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3)</sup>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임시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양여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임(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p.490, 2024).

3) 이소영·이제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방안」,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을 촉진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 <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지자체 임시사용 현황('25년 3월) >

| 반환기지명<br>(기지규모(만 ㎡)) | 임시사용<br>지방자치단체 | 용 도   | 임시사용<br>규모(㎡) | 기 간                   | 연간<br>사용료(원) |
|----------------------|----------------|-------|---------------|-----------------------|--------------|
| 캠프 카일<br>(15)        | 의정부시           | 야적장   | 499           | '24. 11.<br>~ '25. 5. | 4,064,410    |
|                      |                | 공영주차장 | 10,079        | '25. 1.<br>~ '25. 12. | 141,500,340  |
| 캠프<br>레드클라우드<br>(83) |                | 도로    | 10,697        | '25. 1.<br>~ '25. 12. | 150,554,920  |
| 캠프 에드워드<br>(25)      | 파주시            | 공영주차장 | 8,012         | '25. 1.<br>~ '25. 12. | 27,610,760   |
| 짐볼스훈련장<br>(1,195)    | 동두천시           | 상수관로  | 14            | '25. 1.<br>~ '29. 12. | 2,920        |
| 캠프 롱<br>(34)         | 원주시            | 공원    | 327,704       | '25. 3.<br>~ '26. 3.  | 무상           |
| 캠프 마켓<br>(74)        | 인천시            | 야구장 등 | 66,379        | '25. 3.<br>~ '26. 3.  | 무상           |

※ 자료 : 국방부

예를 들어,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중 일부를 도로<sup>4)</sup>로 임시 사용하면서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을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미군 주둔으로 도시발전이 제한되어 왔다는 점,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 불특정 다수가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정부시가 사용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sup>5)</sup>

4)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15 일대(가능삼거리(경민대) ~ 체육관앞교차로(종합운동장))

5) 경기북부시민신문, “국방부에 CRC 통과도로 사용료 지불 논란”, 2023.09.11.  
서울신문, “시민 품 돌아온 미2사단 관통도로... 사용료가 1.6억?”, 2024.04.08.

다만, 개정안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일반재산에 대한 무상대여 및 양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해당함.<sup>6)</sup>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①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나 ②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으며,<sup>7)</sup>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을 뿐임.

---

6)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7)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현재 공여해제반환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데,<sup>8)</sup> 국방부는 임시사용되는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지 매각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있음.<sup>9)</sup>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내 ‘일반재산’에 대하여 무상 대여 및 양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사용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 중 개정안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및 지역 개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 매입 비용과 도로 건설 비용, 각종 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 ② (이하 생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2조(공여 결정의 통보 및 협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합중국”이라 한다) 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전환) ① 국가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권을 이관(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한다.

9) 국방부는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민법」 제245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 점유 등에 따른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 매각 전에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함.

정하여 비용 중당의 특례를 이미 마련하고 있고,<sup>10)</sup>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와 인천시는 국방부와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서’에 따라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sup>11)</sup>

####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 ②~④ (이하 생략)

####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 11)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④ (이하 생략)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용시설의 신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sup>12)</sup>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활용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무상대여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원의 중복이나 다른 국고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국유재산인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에 대한 특례를 규

---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 1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이하 생략)

정하고 있으므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등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 함)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이므로,<sup>13)</sup> 개정안에 따라 무상 사용 또는 양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고 주한미군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제정 당시 2014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 외에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sup>14)</sup>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

---

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공여해제반환재산”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④ (이하 생략)

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로 [별표]를 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등 국유재산 특례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sup>15)</sup>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감소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50 |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15)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1호, 2025.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 2025.01.22. 발의, 2025.01.23.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2025.04.24.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